

『경북 예천군 시민안전공제』 혜택 안내

◆ 공제가입 내용

- 피공제자 : 주민등록법에 의거 예천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 보장기간 : 2019. 05. 25(00:00시) ~ 2020. 05. 24(24:00시) (1년)
- 공제회비 : 예천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예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공제가입 혜택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예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예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예천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	예천군민(청소년 만13세~만18세)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0만원 (90일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예천군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미아찾기 지원금	예천군민(만8세이하의 어린이)이 미아상태가 되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100만원
성폭력범죄 보상금	예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농기계상해 사망	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담보사항 안내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의 정의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가입금액을 지급

2.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해

☞ 사고의 정의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2.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정의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정의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1. 보상하는 손해

-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2.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강도의 정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2.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금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3.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의 정의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2.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료사고의 정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법률비용이란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2.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 공제등록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공제등록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사고
 - 회원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의료사고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1. 보상하는 손해

2. 주요 면책사항

❖ 사고의 정의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것을 사고로 정의 합니다.

❖ 억류상태의 정의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2. 기만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사고발생의 확인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에 관할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 ❖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공제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일일 공제가입금액을 90일 한도로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의 정의

만12세 이하인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단, 1급~5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정의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부상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2. 주요 면책사항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미아찾기 지원금

사고의 정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1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미아찾기 지원금으로 공제금 수익자(공제금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 후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 공제등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 주요 면책사항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사고의 정의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보상하는 손해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공제가입금액

2.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농기계 상해
사망, 후유장해**

☞ 사고의 정의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각 호에서 정하는 농기계사고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2.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통행중의 피공제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의 정의

1.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2.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3.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4.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5. 지자체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1. 보상하는 손해

☞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2. 주요 면책사항

-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2. 피공제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하여 생긴 손해

※ 해당 안내문은 혜택 안내를 위한 약관 요약본으로 세부사항은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규칙]-[시민안전공제 약관]

◆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목록 (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

- 피해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	보상금	
1. 공제금 청구서	○	○	○	○	- 서식 활용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
3. 사고내용 확인되는 증빙서류	○	○	○	○	- 병 원 : 후유장애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119구급일지 등 - 경찰서 : 성폭력, 범죄 등 사건사실 확인원
4. 망인기준의제적등본	○				- 미혼일 경우 부모님 기준
5.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 사망여부 기재 - 미혼일 경우도 첨부
6.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여부 기재
7.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 사망일자 기재
8.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발급기관에 “기본증명서” 요청 - 개명 등의 변경이 있을시 첨부
9. 위임장(미성년, 사망시)	○	○	○	○	- 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위임순위: 1순위: 자녀=동등순위: 배우자 2순위: 부모=동등순위: 배우자 ① 배우자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1순위인 성년 자녀가 있을 시 작성 후 인감 날인(성년자녀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음) -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생존 부모님이 작성 후 인감날인 ② 자녀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순위인 배우자가 작성 후 인감날인 - 배우자가 없을 시 대표위임자를 뺀 나머지 형제, 자매가 작성 후 인감날인 ③ 직계존속(부모)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순위인 망인의 배우자와 생존 부모 두분 중 한 분이 작성 후 인감날인 ▶ 위임받으시는 분 - 대표 위임인 작성 후 서명 날인
10. 위임인 인감증명서(필요시)	○	○	○	○	-
11. 공제금 청구인 신분증, 동장사본	○	○	○	○	-
12.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

○ 보내실 곳 : (061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 10층 법인영업8부

사업문의 : 02-3274-2013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02-6900-2200

공제금 청구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用]

확인 사항	1. 공제금 청구 필요서류, 접수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체에 안내된 공제금청구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주민번호 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릅니다.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
----------	---

1. 공제가입 기본정보 및 피공제자 인적사항

피공제자 (상해발생자)	성명		주민 번호		
	휴대 전화			직장명/ 하시는 일	
	주소	(군)	시(도)	구	(상세 주소)
공제계약자	소속 기관	차지단체명		사업자 번호	
보상관련 안내처 (공제금수령인)	▶ ☐ ◀ 피공제자	▶ ☐ ◀ 기타 (성명:	관계:)		
	휴대 전화				

* 사고접수/보상신청 및 처리결과는 전화 또는 휴대폰문자(SMS)로 안내되며, 보험금지급에 대한 추가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항목중에 선택 체크 및 기재바랍니다

▶ ☐ ◀ 팩스(번호) : ▶ ◀ E-mail: (@)

▶ ☐ ◀ 우편(주소):

2. 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 (손해/생명보험, 공제 및 단체보험) ▶ ☐ ◀ 있음 / ▶ ☐ ◀ 없음 (필수체크)

보험회사	1 ()	2 ()	3 ()
------	----------------------------	----------------------------	----------------------------

3. 사고 사항 (▶ ☐ ◀ 상해 / ▶ ☐ ◀ 교통사고)

사고일시	년 월 일	사고장소	
사고(내원) 경위	병원명 (진료과) / 진단명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처리: ▶ ☐ ◀ 아니오 ▶ ☐ ◀ 에	처리보험사:	담당자 및 연락처:
공제계약자	차량번호:	차량탑승위치: ▶ ☐ ☐ ☐ ☐ ☐ ☐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보행중 기 타()

4. 공제금 수령 계좌

송금요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

본인은 [공제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심사기간 및 지급일 등)을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청구자 본인은 상기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관련서류 또는 증거가 위조·변조된 경우에는 공제금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공제금청구자 (피공제자)	성명	서명 (인)
------	-------	------------------	----	--------

* 사기행위 (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 진단, 장해, 피해과장, 사고후 공제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피공제자가 서명하시고 사망,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그 친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청구를 위한 필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동의 체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주)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한화손해보험(주)	☒		

※ 필수 체크 항목으로 각 동의란에 체크 ☒ 하십시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제금지급·심사(공제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사고 조사(사기행위 조사 포함), 공제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금융거래(공제회비 및 공제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 사고 조사(사기행위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제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사기행위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공제)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공제금지급·심사(공제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사고 조사(사기행위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 정보

- 공제계약정보, 공제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 조회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제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공제)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공제)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보험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 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공제금지급·심사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공제협회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제가입 및 공제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공제)회사 등 : 사고조사(사기행위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공제금청구 서류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 금융거래 업무(공제회비 및 공제금 등 출·수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질병·상해정보처리

동의함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 면허증번호

동의함 ▶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인)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당 양식은 주로 사망보험금 수령시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사용하는 양식임]

위임장

1. 위임받는 자

수임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보험금 지급관련 계약사항

공제종목	시민안전공제
계약자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사유 :	

상기에 기재된 공제가입내역과 관련한 피공제자의 상해사고에 따른 공제금의 수령권한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나 민, 형사상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3. 위임하는 자

위임자	성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을 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KB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귀중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되면 공제금청구권자(위임받는자)가 공제금청구서 작성 및 개인정보동의대리가 가능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분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함